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r> | <b>보 도 자 료</b>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 |
|  |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.5.6.(수) 조간 |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책 임 자  | 금융위 자본시장과장<br>손 영 채(02-2100-2650)   | 담 당 자           | 허 성 사무관<br>(02-2100-2655)   |  |
|  |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<br>이 경 식(02-3145-7580) |                 | 문 상 석 팀 장<br>(02-3145-7600) |  |

## 제 목 : ‘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’ 도입 1년 연기

■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‘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’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

⇒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**70조원 이상**인 금융회사는 ‘**21.9.1일부터**, **10조원 이상~70조원 미만**인 금융회사는 ‘**22.9.1일** 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 발생

### 1. 국제 동향

□ BCBS(바젤은행감독위원회)와 IOSCO(국제증권감독기구)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회사의 인력부족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,

○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(권고)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.(’20.4.3일)

\* ISDA(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) 등 20개 글로벌 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 < 기 존 > < 연 기 후 >

| 거래잔액                  | 적용시기      | 적용시기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3조€ 이상                | ’16.9.1일  | 既 적용       |
| 3조€ 미만 ~ 2.25조€ 이상    | ’17.9.1일  | 既 적용       |
| 2.25조€ 미만 ~ 1.5조€ 이상  | ’18.9.1일  | 既 적용       |
| 1.5조€ 미만 ~ 0.75조€ 이상  | ’19.9.1일  | 既 적용       |
| 7,500억€ 미만 ~ 500억€ 이상 | ’20.9.1일* | ⇒ ’21.9.1일 |
| 500억€ 미만 ~ 80억€ 이상    | ’21.9.1일* | ’22.9.1일   |

\*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정 → 법률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(’20.3.6일)

○ 싱가포르(MAS), 캐나다(OSFI), 스위스(FINMA), 일본(JFSA), 유럽(EBA) 등도 BCBS·IOSCO의 결정과 같이,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였습니다.

## 2. 국내 이행시기 : 1년 연기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와 관련한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,
  - 국내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,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※ 코로나19로 인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준비 관련 어려움

- ① (인력 부족) 재택근무, 분리근무(대체사업장) 등의 시행으로 기존 업무유지 외에 신규업무 추진이 곤란
- ② (위기대처 집중) 시장변동성 확대로 자금조달 등 유동성 확보, 우발채무 및 포지션 관리 등 단기적 상황대처에 주력
- ③ (해외협업 곤란) 서버 등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과 기술관련 인력의 국내입국이 지연

-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,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  - 따라서,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'21.9.1일부터,
    - \* '19년 기준 39개 : 은행23개(외국계14개), 증권8개, 보험8개
  -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~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'22.9.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합니다.
    - \* '19년 기준 19개 : 은행5개(외국계4개), 증권7개, 보험6개, 자산운용1개

### < 금융 용어 설명 >

- 비청산장외파생상품 : 중앙청산소(CCP)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## 참 고 장외파생상품 제도개선 추진현황

□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

① (중앙청산소)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의무청산을 시행('14.6월)

② (높은 수준의 자본요건)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바젤Ⅲ자본비율 산출시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('14.6월)

③ (증거금) 금감원 가이드라인(행정지도)을 통해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 부과제도를 시행('17.3월)

④ (거래정보저장소\*)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근거를 마련('19.1월)

\* 장외파생상품 관련 계약 정보를 수집, 보관,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

⑤ (전자거래플랫폼)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장현황과 국제동향을 모니터링

\* G20 합의내용 : '적절한 경우(when appropriate) 전자거래플랫폼(ETP) 도입

### <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도입현황 >

| 제도개선 내용                    | 도입방법                     | 도입시기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중앙청산소(CCP) 도입              | 자본시장법                    | '14.6월 |
|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적용             |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           | '14.6월 |
| 증거금(Margin Requirement) 부과 | 가이드라인                    | '17.3월 |
| 거래정보저장소(TR) 도입             | 금투업규정                    | '19.1월 |
| 전자거래플랫폼(ETP) 도입            | 도입방안 검토('17.10월 연구용역 완료) | 미정     |